
2022년도 강원디자인진흥원 정기 종합감사
감 사 결 과 심 의 서 류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일련번호: 01]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외부강의 등의 신고 소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르면,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고 신고하면서 [표 1]과 같이 외부강의 등의 신고 13건에 대하여 미신고 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하였으며,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였음에도 미리 원장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외부강의 등 신고 미준수 현황

구분	신고자	외부강의 등 내용	강의등일자	신고일자	지연일	비고
계		13건				
1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직원채용 면접전형 참석	2021. 5.11	미신고	-	
2		신기술분야 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사업 프로젝트 챌린지 심사	2021. 8.26.	2021. 9.14.	19	
3		강원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정책 거버넌스 분과별 회의	2021.10.19.	2021.12.10.	52	
4		강원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정책 거버넌스 분과별 회의	2021.11.29.	2021.12.20.	21	
5		2022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면접요원	2022. 4.29.	2022. 5.13.	14	
6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자 선정평가	2022. 5. 0.	2022. 7. 4.	-	일자미재
7		지역연구회 운영을 통한 스마트 특성화 구축사업 기획보고서 도출	2022. 8.31.	2022. 9.15.	15	
8		빅데이터를 활용한 피부관리기기 타겟 소비자 유형 분석	2022. 9.16.	2022.11.14.	59	월3회 초과 외부 강의
9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사지기기 타겟 소비자 유형 분석	2022.10. 4.	2022.11.14.	41	
10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사지기기 타겟 소비자 유형 분석	2022.10.11.	2022.11.14.	34	
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파진동기기 타겟 소비자 유형 분석	2022.10.18.	2022.11.14.	27	
12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파진동기기 타겟 소비자 유형 분석	2022.10.25.	2022.11.14.	20	
13		디자인 멘토를 통해 고충 및 애로사항 경감	2022.10.27.	2022.11.14.	18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외부강의 등을 위한 복무관리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진흥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 직원의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강원도의 조례 또는 규칙, 디자인진흥원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진흥원 「인사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징계의 양정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의 임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표 2]와 같이 소속 임직원이 3건의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소속 상사의 허가(출장) 없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출장허가 없이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구분	신고자	외부강의 등 내용	일자	출장지	비고
계		3건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자 선정평가위원회	2022. 5. 0.	춘천	요일미기재
2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인제세미나 토론자	2022. 7. 1.	인제	
3		시민이 그리는 문화도시 춘천 일러스트&디자인 공모전 심사	2022. 5.12.	춘천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진흥원 「인사규칙」 별표2 징계양정 기준(제25조 관련)

1. 성실의무 위반,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3.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정 소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 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이라 한다.)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0조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할 때 준수 여부 점검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2021. 1. 13.)하면서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항목을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시정]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누락된 준수여부 점검 항목을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 신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2]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시설임대료 감면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단법인 강원 디자인진흥원 시설·장비관리규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진흥원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시설·장비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원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이나 장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강원디자인진흥원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에 따르면,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도”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진흥원 내 시설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따라야

하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임대인 경우 요율은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내방객 편의 제공과 직원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시설 일부를 카페 시설로 임대하면서 사용료를 산정할 때 공유재산 법령이나 조례, 진흥원 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사용자 및 직원 복리후생시설이 공공목적이라는 사유로 [표 1]과 같이 사용료를 50% 감면함에 따라 5,065천 원의 임대료를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며,

기업지원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임대료를 산정·부과하면서 진흥원 규정 상에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음에도 “2020년 강원디자인진흥원 임대사업 운영 관련 검토보고(2020. 11. 23.)” 에 [표 2]와 같이 임대료 감면(안)을 임의대로 적용하여 [표 3]과 같이 11,676천 원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한 사실이 있어 진흥원의 임대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임대료 과소 부과 현황

(단위: m², 원)

해당 연도	임대 재산	임대목적	임대 면적	기부과			적정부과		차액
				면적당 월 임대료 (요율 5%)	감면	연간임대료 산정(VAT포함) (실제부과)	면적당 월 임대료 (요율 4%)	연간임대료 산정(VAT포함)	
합계	2건					10,672,800 (12,000천 원 ²)		17,065,000	5,065,000
2021	카페 D틀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직원 휴식공간	70.8	11,420	50%	5,336,400	9,130	8,532,500	2,532,500
2022						5,336,400		8,532,500	2,532,500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카페D틀 임대료 실제 부과현황: 12,000천 원 (산정내역 확인 불가)

[표 2]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안)

연번	구분	감면율 (%)	월 임대료 (예상)
1	디자인 분야 기관/업체	70%	208,506원
2	디자인 분야 예비 창업자		
3	협약기관/업체	30%	486,964원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업체	20~30%	486,964~556,016원

[표 3] 입주기업 임대료 과소부과 현황

입주기업	기부과 (감면70%)	적정부과 (감면없음)	차액 (VAT 미포함)
2개	5,004,108	16,680,208	11,676,100
(주)예술공공	2,502,054	8,340,104	5,838,050
(주)디자인마디	2,502,054	8,340,104	5,838,050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주의]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 감면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3]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물품 관리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단법인 강원 디자인진흥원 시설·장비관리규정」 및 「강원디자인진흥원 관리 위·수탁 협약서」 등에 따라 진흥원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1. 물품 대부 업무 소홀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의 물품관리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소관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면서 [표 1]과 같이 11개 품목, 65개의 물품을 카페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대부 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카페디틀 관리위탁 대상물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대부료 1,466천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카페 운영 물품 무상 임대현황

(단위: 개, 원)

구분	품목	수량	금액	연간 사용료 (6% 요율)	소유자	비고
계	11	65	24,440,000	1,466,400		
1	그라인더	1	1,350,000	81,000	강원도	수탁관리 대장 미등재
2	커피머신	1	8,800,000	528,000		
3	전기물끓이기	1	990,000	59,400		
4	제빙기	1	1,850,000	111,000		
5	냉테이블(5자)	1	1,850,000	111,000		
6	냉테이블(3자)	1	1,350,000	81,000		
7	전기냉장고	1	2,750,000	165,000		
8	푸드믹서	1	2,650,000	159,000		
9	싱크대	1	2,850,000	171,000		
10	탁자	15	미확인	-		
11	의자	41	미확인	-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물품 실태조사 미실시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의 물품관리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소관 물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표 2]와 같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소관 물품에 대하여 2022. 12. 9. 감사일 현재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진흥원 물품 현황

(단위: 개, 천 원)

물품명	수량	물품 취득가액	비고
스마트워크 도입 태블릿 PC 등 157건	264	158,622	실태조사 미실시로 물품 수량 변동가능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시정] 소관 물품에 대하여 조속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4]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복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1. 코로나19 확진 시 휴가 사용 부적정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복무규정」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가는 같은 규정 제11조의 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³⁾에 해당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도 공무원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 강화 방안 알림 및 준수 요청’⁴⁾을 시행하고,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①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3)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4) 강원도 총무행정관-37358(2020. 11. 23.)호, 강원도 전략산업과-7361(2020. 11. 24.)호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하며, ②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침은 산하기관에 포함 적용된다고 알렸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하여야 할 때에는 ‘병가’ 로, 소속 임직원의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하는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공가’ 또는 재택근무 하도록 조치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직무 수행 가능 여부와 해당 병가 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제외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경영관리팀)에서는 [표 1]과 같이 임직원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음에도 이를 병가가 아닌 공가⁵⁾로 승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코로나19 관련 공가 사용 현황

(단위: 일)

구분	대상자	기 사용			정당 사용			비 고
		병가	공가		병가	공가		
			본인 확진	동거인 등		본인 확진	동거인 등	
합계	-	7.8	31		38.8	0		-
1		3	4	1	7	-	1	6일 초과
2		-	5	-	5	-	-	
3		-	1	5	1	-	5	
4		-	4	1	4	-	1	
5		1	4	5	5	-	5	
6		2.5	4	1	6.5	-	1	6일 초과
7		1	5	1	6	-	1	
8		0.3	4	-	4.3	-	-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5) 공가 신청 가능 사유

- ①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② 본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 ③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이와 관련 당사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공가를 병가로 정정한 결과, 000 등 2명은 2022. 12. 9.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한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 등에 따른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진흥원(경영관리팀)에서는 임직원이 공가를 신청하면 각주³⁾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에도 [표 2]의 000 등 6명이 신청한 공가 7건이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가를 허가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공가 승인 현황

(단위: 명/회)

구분	대상자	신청일자	공가 사유		공가사유 해당여부
			신청 당시	추후 확인	
합계	6명	7회			
1		22. 1.18.	없음	코로나19 백신접종	해당
2		22. 2. 3.	없음	코로나19 백신접종	해당
3		22. 3.21.	없음	동거가족 코로나 확진	해당
4		22. 2.24.	없음	코로나19 백신접종	해당
		22. 3.22.	없음	코로나19 백신접종	해당
5		22. 3.29.	없음	본인 코로나19 유증상	해당
6		22. 4. 4.	없음	본인 코로나19 유증상	해당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출장명령을 득하지 아니한 출장 부적정

「복무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출장하는 직원은 해당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면 아니되며,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출장 직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장목적, 일시, 출장지 등을 출장신청서에 기재한 후 출장명령을 득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경영관리팀)에서는 [표 3]과 같이 임직원이 출장신청서에 출장 등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등 부적정하게 복무하였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출장명령부 미등록 현황

(단위: 명, 원)

연번	출장명령부			차량운행일지				
	출장일자	목적지	출장목적	운행일자	차량번호	탑승자	용무	목적지
1	-	-	-	2022. 5.13.	11호5549	원장	강원도 일본본부 및 재일본 한국농식품연합회 미팅	서울
2	-	-	-	2022. 5.24.	11호5549	원장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심사위원 참석	성남
3	-	-	-	2022. 7.10.	11호5549	원장	타 시도 디자인 진흥원 기관장 회의 참석	서울
4	-	-	-	2022. 7. 20.	11호5549	원장	대한민국 국가 상징 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	서울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주의] ① 임직원이 공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사유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승인하고, 병가 신청일이 6일을 초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징구하고 연가일수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직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여 명령을 득하고 출장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5]

강 원 도 권 고

제 목 연구수당 등 지급 규정 개선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개인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는 근무실적 평가 및 평가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급이 나눠먹기식 배분이 되지 않도록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21. 2. 25. 「연구수당 등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연구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대상 확정 필요

「연구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따르면 “연구수당 등”이라 함은 연구수당과 지원인력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말하며,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연구수당 세목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말하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원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원하는 능률성과급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020-470호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성
과급 운영 투명성 제고」 의결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원부서 전체 근무자에
대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업무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무관한 인력 등에도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진흥원에서는 2021. 2. 26. “연구수당 등 지급관련 운영계획⁶⁾” 을 수립하고
[표]와 같이 연구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표] 연구수당 등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지급항목	지급일	대상자	내 용	지급액	평가결과
	합계	-		23,442	
연구능률 성과급	21. 2.26.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 지원 등	472	C
	22. 2.11.		회계시스템 구축 및 연구지원 등	1,526	A
	22. 2.11.		임대시설 운영 및 자산관리 등	1,144	B
연구수당	21. 2.26.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 수행	480	B
	21. 2.26.		상동	640	A
	21. 2.26.		상동	320	C
	21. 2.26.		상동	480	B
	21. 2.26.		상동	480	B
	22. 2.11.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디피코)	3,580 429	S B
	22. 2.11.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디피코)	2,864 571	A A
	22. 2.11.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유니체스트)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투엔티플러스)	1,432 1,143 714	C S S
	22. 2.11.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유니체스트)	2,864 457	A C
	22. 2.11.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디자인 혁신역량강화사업(투엔티플러스)	2,864 286	A C
	22. 2.11.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	2,148	B
	22. 2.11.		디자인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	2,148	B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6) 강원디자인진흥원-534(2021. 2. 26.)

그런데 진흥원 “연구수당 등 지급관련 운영계획”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의 지급대상을 「연구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한 지원인력에 한한다고 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에는 “지원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조직을 정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이 모호하여 임의로 “지원인력”을 판단·평가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구지원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원인력”의 범위를 명확히 이사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지원부서 인력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지급 제외 규정의 마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 지급제외 기준을 두고 있는데, ①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②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④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⑤ 임원이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급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수당 등” 역시 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하므로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기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진흥원 「연구수당 등 지급규정」 및 “연구수당 등 지급관련 운영계획”에는 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제외 기준이 전무하여 중대 과실자 또는 일정 기준 이하자에 대하여도 우수한 인력으로 평가하여 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등을 준용하여 일정 기준 이하자 및 중대 과실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의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권고]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지원인력”의 범위 및 조직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준 이하자 및 중대 과실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6]

강 원 도 개선 요구

제 목 위탁 대행수수료 편성 근거 마련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표]와 같이 강원도 등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위수탁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 원)

협약일	위탁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수료	요율
합계		10건		1,963,000	129,100	
20. 6. 3.	강원도 (전략산업과)	2020 디자인산업 활성화	20. 5. 1.~ 21. 3.31.	500,000	15,000	3%
21. 2.26.	강원도 (전략산업과)	2021 디자인산업 활성화 추진	21. 2. 1.~ 22. 1.31.	413,000	35,000	8.5%
21. 2. 3.	강원도 (관광개발과)	2021 강원면세점 경쟁력 강화	21. 1.29.~ 22. 2.28.	175,000	8,750	5.0%
21. 8.25.	강원도 (관광개발과)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 디자인 개선	21. 6.15.~ 22. 3.31.	20,000	9,600	8.0%
21. 7.21.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도내 인권현장 안내홍보를 위한 조형물 설치	21. 6.29.~ 21.12.31.	10,000	1,000	10.0%
22. 3.18.	강원도 (전략산업과)	2022 디자인산업 활성화 추진	22. 2. 1.~ 22.12.31.	400,000	32,000	8.0%
22. 2. 3.	강원도 (관광개발과)	HDC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	22. 1. 1.~ 22.12.31.	175,000	8,750	5.0%
22. 3.15.	영월군	미래 영월관광 통합브랜드 개발	22. 3. 1.~ 22.12.31.	100,000	10,000	10.0%
22. 4.29.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인권현장 교육자원화	22. 3.17.~ 22.12.31.	10,000	1,000	10.0%
22.10.20.	강원도 (대변인실)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개발	22.10.14.~ 23. 6.10.	160,000	8,000	5.0%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는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편성할 때에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위수탁협약서에 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표]의 10개 사업에 대하여 대행협약을 체결하면서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기관⁷⁾의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대행 수수료 129,100천 원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개선]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을 포함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7)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전략산업과) 출연기관임

[일련번호: 07]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회계관계직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진흥원 「재무 회계 규정」 등에 따라 예산과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원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8)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그 이외의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 및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고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의 방식으로 1,000만 원 이상을 한도로 재정보증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한편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8) 디자인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5조 각호

1. 징수관: 원장, 2. 재무관: 원장, 3. 재산관리관: 원장, 4. 물품관리관: 원장, 5. 채권관리관: 원장,
6. 부채관리관: 원장, 7. 지출원: 회계업무소관팀장, 8. 출납원: 지출원이 지정하는 자

및 분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나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1년간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각각의 관직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표]와 같이 2022. 1. 1. ~ 2022. 12. 31. (1년간)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하면서 각각의 회계담당관직별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하여야 하나 직위(원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직원, 경영관리팀장)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재정보증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원)

연번	직위명	보험가입금액	피보증인 수	보험 시작일	보험 종료일	보험료	비 고
계		40,000,000	4명			33,480	
1	원장	10,000,000	1	2022. 1. 1.	2022.12.31.	8,370	
2	사무국장	10,000,000	1	2022. 1. 1.	2022.12.31.	8,370	
3	회계담당직원	10,000,000	1	2022. 1. 1.	2022.12.31.	8,370	
4	경영관리팀장	10,000,000	1	2022. 1. 1.	2022.12.31.	8,370	

※ 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시정]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 등 각각의 회계관계직별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